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1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17일
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8조제2항 문구 수정

2. 주요 골자

-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는 주체로 관리청을 명시함(안 제18조제2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8조제2항 중 “가로수는”을 “관리청은”으로, “없도록”을 “없도록 가로수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(도로표지판 등 설치) 〈신 설〉	<p>제18조(조성·관리 협 의 등) ① 법 제12 조에 따라 「도로 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이 도로공사 또는 정 비를 하려는 경우에 는 그 도로에 가로수 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부터 가로수를 조성 할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.</p> <p>② 가로수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·관리하여야 한 다.</p> <p>① · 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조성·관리 협 의 등) (개정안과 같 음)</p> <p>② 관리청은 ----- ----- ----- 없도록 가로수를 ----- --.</p> <p>③ · ④ (개정안과 같 음)</p>
〈신 설〉		
① · ② (생략)	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·관리하는”을 “조성·관리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제2항 단서 중 “제18조”를 “제20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6호 본문 중 “방제시에는”을 “방제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제18조”를 “제20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보호 할”을 “보호할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도로표지판 등 설치)”를 “(조성·관리 협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2조에 따라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3조”를 “제14조”로, “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”를 “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
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가지치기) ① (생략)

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③ · ④ (생략)

제13조(병해충의 방제) 관리청은
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
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
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
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외과수술 등) ① 병해충, 분진, 매연, 화학약품, 물리적 피

제12조(가지치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병해충의 방제) -----
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방제는

제14조(외과수술 등) ① -----

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, 영양공급, 토양개량, 통기구,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8조(도로표지판 등 설치) <신설>

〈신 설〉

① · ② (생 략)

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
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0
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
다. 다만, 관리

② 보호할.

제18조(조성·관리 협의 등) ① 법
제12조에 따라 「도로법」 제2
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
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
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
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
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
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
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
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조성·
관리하여야 한다.

③ · ④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
같음)

제20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)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·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, 「산림조합법」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3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 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 9제1항 관련 별표 1의6의 수목 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